

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(강화)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4조) 행위의 제한

- 어린이놀이시설내 시설물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‘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’를 신설하였음.

- (안 제7조 및 제10조) 안전감시망 구축 및 표창

- 관련 조례명 및 포상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음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한행위를 추가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